

「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2. 30(금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3. 8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3. 9(금)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도시건축과장)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수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- 전통사찰 및 문화재, 한옥에 대한 건폐율 완화(안 제55조)
 - 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,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,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기존 20%이하에서 30%이하로 완화
-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 건폐율 완화(안 제56조의2)
 -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·연구시설, 농산물 건조·보관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%이하에서 60%이하로 완화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 등의 전통사찰, 문화재,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30%이하로 완화하고
 -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의 건폐율을 60%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근거하여 건폐율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